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04
----------	-------

발의연월일 : 2018. 12. 24.

발의자 : 임재훈 · 김동철 · 신용현

이동섭 · 김수민 · 김관영

주승용 · 이찬열 · 하태경

김삼화 · 채이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아 3법’의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부가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되, 관계자 의견과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나 국·공립유치원은 투명한 수입·지출의 확인을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만, 쟁점이 되었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고, 교비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근거를 두고자 함.

또한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고,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하며,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그 밖에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시정·변경명령 또는 운영정지·폐쇄 등 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

칙적으로 의무화하여 학부모 감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3 신설).
- 다.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5항).
- 마.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5항).
- 바.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2 신설).
- 사.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자.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안 제30조제2항).

차.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카.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인 경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

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평가결과의”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업무”를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1항 본문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2항 중 “가하여서는”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보조금의”를 “보조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을 “다음”으로, “보조금의”를 “보조금·지원금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조금을”을 각각 “보조금·지원금을”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등의”를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명령을”을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현원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 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 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u> <u>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u> <u>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u> <u>설립·경영자인 경우</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3. (생 략) ④ (생 략) <u><신 설></u>	<u>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u> <u>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u>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u> <u>피한정후견인</u> 2.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u> <u>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u> <u>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u>
	<u>환자</u>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
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
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
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
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
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
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평가)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

제19조(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에 따른 평가결과의-----

-----.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업무(회계관리를 포함
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설>

4. ~ 10.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생 략)

-----두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현행과 같음)

<p>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 ----- ----- ----- <u>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u></p>
<p>제28조(<u>보조금의</u>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사립유치원의</u>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u>보조금의</u>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제28조(<u>보조금 등의</u> 반환) ① --- ----- ----- ----- <u>보조금·지원금의-----</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유치원 목적외에 <u>보조금을</u>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보조금을</u> 지급받은 경우3. 4. (생 략)② ③ (생 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보조금·지원금을-----</u>2. -----<u>보조금·지원금을-----</u>3. 4. (현행과 같음)② ③ (현행과 같음)
<p>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생 략)</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p>	<p>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
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제30조의2(평가 및 조치 등의 공

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

1. -----

-----명령이나

반한 경우	<u>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을-----</u>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